

# 회 의 록

명 칭 : 200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  
 일 시 : 2002년 1월 18일(금) 15:00 - 17:00  
 장 소 : 2006 IFLA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세미나실  
 참석자 : 15명(이사 총 15명 중 14명 참석, 감사 2명 중 1명 참석)  
 신기남(회장), 신현택, 이용남(이상 이사), 강석관, 김석영, 김정근, 박광하, 백항기, 서경은, 이경구, 이은철, 정해성, 조원호, 한상완(이상 이사), 박종근(감사) 참석  
 (불참자 : 권영빈 이사, 남택수 감사)  
 안 건 : 1) 2001년도 사업실적  
 2) 200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3)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5)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회원 제명  
 6) 제34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 방법

## \*\* 회의내용 \*\*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조원호 사무총장 : 이사 15명중 14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림.  
 신기남 의장 : 200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2. 지난 이사회 회의록 낭독

이현주 총무부장 : 2001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유인된 회의자료 I (내용별첨) 1~2쪽을 참고로 낭독함.  
 의장 : 2001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문함.  
 - 2001년도 이사회 회의록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 3. 안건심의

#### 안 건 1 : 2001년도 사업실적

조원호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내용별첨)를 참고로 2001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함.  
 의장 : 2001년도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음.  
 박종근 감사, 한상완 이사 : 우리 협회에서 지난 해 작성한 “대학도서관기준”이 실제 대학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함.  
 사무총장 : “대학도서관기준”을 제작 완료하여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추후 대  
학평가에서 도서관이 비중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2001년도 사업실적 보고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안 건 2 : 200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총무부장 : 유인된 자료(내용별첨)를 참고로 2001년도 결산을 상세히 보고함.

한상완 이사 : 협회가 적립하고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특별한 계  
획이 없다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으로 동 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된 이상  
상기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을 협회 “일반회계”나 “회관건립기금” 등 에 이체  
하여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사무총장 :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한상완 이사가 제안한 의견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  
변 함.

박종근 감사 : 2001년도 수입, 지출 결산에 관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함.

개인 회비 및 자료분담금의 체계적 징수와 자료분담금 미납에 따른 이월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고, 단체 및 개인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  
안함.

의장 : 200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음.

- 200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안 건 3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총무부장 : 유인된 자료(내용별첨)를 참고로 2002년도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고함.

의장 : “전국도서관대회” 장소가 정해졌는지 질문함.

총무부장 :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참가 규모가 커져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한상완 이사 : “IFLA 2006 서울 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도서관계 현황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을 담당할 팀을 올해  
부터 가동시킬 것을 제안함.

신현택 이사 : 2003년 부터 “IFLA 2006 서울 총회” 준비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올 4~5월경까지 “IFLA 2006 서울 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야 하  
며,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함.

사무총장 : “IFLA 2006 서울 총회” 준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총무부장 : 유인된 자료(내용별첨)를 참고로 2002년도 예산(안)을 상세히 보고함.

국고보조가 2001년 3천7백5십만원에서 올해 8천만원으로 증가했음을 보고, 참석  
이사들이 회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박수로 표현함.

의장 : “IFLA 2006 서울 총회” 준비 비용이 현재는 협회 일반 예산의 차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국고보고금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  
부함.

사무총장 : “IFLA 2006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의장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음.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안 건 4 :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내용별첨)를 참고로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취지 및 주요골자를 보고함.  
의장 :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사무국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

안 건 5 :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회원 제명

총무부장 : 2001년도 1월~12월 사이 우리협회 신입회원 가입을 신청한 단체 및 개인의 명단과 2001년도 회원탈퇴를 신청한 단체 및 개인의 명단을 발표(명단 별첨)한 후, 입회 및 탈퇴 승인을 요청함.  
의장 :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회원 제명에 대한 의견을 물음.  
의장 :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원 입회 및 탈퇴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안 건 6 : 제34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사무총장 : 오늘 신년교례회를 겸한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정기총회 개최 전의 이사회가 예년 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열리게 되어 부득이 2002년 1월 31일에 마감하는 제34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시행하도록 의결하여 줄 것을 제안함.  
의장 : 제34회 한국도서관상수상자 결정은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시행할 것을 선포함.

안 건 7 : 기타

사무총장 : 우리 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에서 제작한 포스터(책 읽는 사람이 이름답다-안성기)를 소개함.  
한상완 이사 :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 방향』보고서를 소개함.  
신현택 이사 : 신년하례회의 초청 범위를 범문화계로 넓혀나가자고 제안함.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아래의 자료는 일본 국회가 2001년 12월 5일 가결, 12월 12일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子ども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우리 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번역한 것으로, 원문은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j-sla.or.jp/shiryos4.html>)에서 볼 수 있다.

##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4호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어린이(통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독서활동은 어린이가 언어를 학습하고 감성을 키우며 표현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풍부하게 하는 활동으로, 인생을 보다 깊이 있게 살아가는 힘을 체득하게 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활동임을 감안하여, 모든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나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제5조 【사업자의 노력】** 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념에 따라 어린이의 독서활동이 추진되도록,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서적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자의 역할】** 부모, 기타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위한 기회의 확충과 그 습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제휴강화】**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학교, 도서관, 기타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그 체제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기본 계획】** ① 정부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어린이독서활동추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독서활동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없이 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③ 전 항의 규정은 어린이 독서활동추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도도부현 독서활동 추진 계획 등】** ① 도도부현<sup>※</sup>은, 어린이독서활동추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당해 도도부현의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각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 시책에 관한 계획(이하「도도부현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정촌<sup>※</sup>은, 어린이독서활동추진기본계획(도도부현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독서활동추진기본계획 및 도도부현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당해 시정촌의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각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 시책에 관한 계획(이하「시정촌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도도부현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 및 시정촌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④ 전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 또는 시정촌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어린이 독서의 날】** ①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어린이의 적극적인 독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독서의 날을 정한다.

② 어린이 독서의 날은 4월 23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어린이 독서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와 기타 관련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로, 일본은 1도(都:도쿄도), 1도(道:북해도),

2부(府:오사카부,교토부), 43현(縣), 664시(市), 2,573정촌(町村)으로 구성되어 있음.

■ (편집자 주)